

# 經營者の 社會的 責任에 관한 小考

玄 鶴 淳

## 目 次

- |                  |                 |
|------------------|-----------------|
| I. 序論            | IV. 社會的 責任의 否定論 |
| II. 社會的 責任의 概念   | V. 社會的 責任의 領域   |
| III. 社會的 責任의 肯定論 | VI. 結論          |

## I. 序 論

企業이 社會的으로 存在할 수 있는 權利, 즉 經營者가 企業活動으로서의 事業을 營爲할 權利는 하늘이 내려주는 絕對的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國家에서 制定한 法律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現代 產業社會의 企業權力인 것이다. 그러므로 現代 產業社會의 企業은 直接的으로는 法律에 의해서 구속을 받게 되고 責任을 履行해야 하는데 根本的으로는 그 法律을 制定한 國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國家를 構成하고 있는 國民에 대해서 積極적인 責任을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은 事業을 營爲하는 權利를 持續적으로 保障받기 위해서 그 權利를 부여한 國家와 그 構成員인 國民들에게 權利에 相應하는 責任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國民들은 企業들이 (특히 大企業일 경우) 社會로부터 받은 혜택 만큼 社會에 대해 공헌하는 責任을 履行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는 우리 나라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先進 資本主義國家에서도 예외일 수 없이 찾아 볼 수 있는 現象인 것이다.

그런데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履行한다는 것은 企業活動의 意思決定權을 갖고 있는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과 同一視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現代 產業社會에 있어서 經營者

라고 하면 專門經營者를 가리키게 되는데, 專門經營者란 資本과 經營이 分離되지 못했던 前近代의 企業에 있어서의 出資者이자 企業家인 所有經營者로서의 單數의 個人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처럼 資本과 經營이 分離된 株式會社 형태의 大企業에서 資本家도 아니고 所有經營者도 아닌 專門職業人, 즉 企業經營에 관한 專門知識과 技術 그리고 能力을 갖춘 專門家의 集團을 일컫게 되는 것이다. 專門經營者는 經營管理를 自己의 專門的 職分으로 해서 職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所有經營者가 資本을 基礎로 해서 企業을 支配하던 企業家에 대신하여 企業의 새로운 支配者로서 廣範한 權限을 行使하고 있기 때문에, 社會는 이들에게 여러가지 責任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責任은 經營者가 個人的으로 社會에 대해 지는 直接的인 責任이 아니라 그들이 支配하고 있는 企業 그 自體를 媒介로 하여 간접적으로 社會에 대해 지는 責任인 것이다. 本稿에서는 經營者가 履行해야 하는 社會的 責任이 具體적으로 어떠한 內容을 가지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概念을 살펴보고, 또한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論에 대해서는 學界에서 贊成과 反對의 두 見解가 있어서 社會的 責任에 대한 肯定論과 否定論을 檢討해 보겠으며, 이어서 社會的 責任의 領域을 檢討해 본 후에 끝으로 論述에 대한 要約과 우리 나라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問題에 대한 認識水準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結論을 맺고져 한다.

## Ⅱ. 社會的 責任의 概念

現代 產業社會에 있어서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이라고 말할 때 社會的이라는 形容詞가 갖는 意味는 여러가지 多樣한 뜻을 內包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理論적으로 統一된 見解에 는 이르지 못한 實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美國 經營學者들의 見解를 綜合해 보면 企業의 意思決定權者인 經營者는 企業의 經濟的 利潤追求活動 以外的 非營利的 非經濟的 道德的 및 社會의 利益 내지 公共의 利益에 관한 諸般役割을 性格지우는 概念으로 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社會的이라는 責任의 內容에 대해서는 狹義와 廣義로 區別해 볼 수 있는데, 狹義의 社會的이라는 뜻은 非經濟的(non economic) 내지 非金錢的(non monetary)과 同一視하는 見解가 있다. 예컨대 經營者가 從業員에 대한 社會的 責任을 진다고 할 때 그 社會的 責任은 從業員의 非金錢的 혹은 非經濟的 慾求를 滿足시켜주는 責任이라고 理解할

때 이에 該當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社會的이라는 뜻을 非經濟的 혹은 非金錢的이라 認識할 때 廣範한 諸個別科學에 의해 蓄積된 知識을 배경으로 하여 論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論者의 知的 背景과 問題點을 觀察하는 側面의 相異함에 따라 強調點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S.D. Walton에 의하면 企業環境을 經濟的 環境 社會的 環境, 政治的 環境으로 區分하여 經營者가 企業環境에 適應하는 責任을 經濟的 責任 (economic responsibility) 과 社會的 責任 (social responsibility) 및 政治的 責任 (political responsibility) 등으로 區分하고 있으며,<sup>1)</sup>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에서도 社會的 責任을 經濟的 責任과 區別해서 說明하고 있는데,<sup>2)</sup> 이와 같이 論者에 따라서는 社會的 責任을 經濟的 責任과 區別해서 非經濟的 혹은 非金錢的 側面을 強調하는 分들이 많음을 認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廣義의 社會的 責任이라고 하면 人間의 主體性 尊重에 대한 責任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人間의 主體性을 尊重하는 責任은 人間이 갖는 모든 慾求를 滿足할 수 있도록 努力하는 責任으로서, 人間이 갖는 具體的인 慾求에는 經濟的 慾求 뿐만 아니라 非經濟的 慾求의 모든 것도 包含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人間의 主體性 尊重에 대한 責任은 앞서 言及한 狹義의 社會的 責任에 經濟的 責任을 包含한 上位의 概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見解에 대해 理論的인 矛盾이라는 批判이 있을 수 있겠지만 狹義의 社會的 責任인 非經濟的 혹은 非金錢的인 責任의 遂行을 위해서는 經濟的인 責任이 必然的으로 뒤따르게 된다는 事實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公害問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公害를 防止하는 것은 地域社會 住民들의 非經濟的 慾求를 充足시켜주는 意味에서는 狹義의 社會的 責任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 때에 公害防止費用을 부담해야 하는 經濟的 責任을 堪當해야 하는 必要性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한편 社會的 責任의 對象이라는 側面에서의 社會的이라는 意味는 狹義로 傳統的인 企業 利潤의 追求에 對比되는 社會의 利益 내지는 公共의 利益에 관한 責任과 廣義로는 企業을 둘러싼 環境主體의 期待利益에 대한 責任 즉 環境主體들과의 利害調整責任을 일컬게 되며, 이 環境主體도 歷史의 흐름과 더불어 變化되고 있는 것이다. K. Davis 와 R. L. Blomstrom에 의하면 100 餘年 前까지 企業의 利害關係者는 投資家 顧客 雇傭人 政府 教會 등이었으나, 오늘날의 企業은 投資家 勞組 同業者協會 都小賣業者 地域社會 大衆 政府 顧客 科學者 專門職業人 經營者 등 多樣한 主體들에 의해 利害者集團을 構成하고<sup>3)</sup>

1) S.D. Walton, American Business and its Environment, 1966. 參照

2) C. E. D.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Social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Corporations, 1971. (經濟同友會編譯, 企業의 社會的 責任, 1972. p. 19. 參照

3) K. Davis and R. L. Blomstrom, Business, Society and Environment: Social Power and Social Response, 1971. p. 20.

있어서 企業環境을 形成하는 主體들의 領域은 점점 擴大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社會的이라는 概念에는 法律的이라는 意味도 包含되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가 法律的이라는 用語에 對比되는 道德的이라는 意味도 包含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이는 資本主義社會의 發展過程에서 불가피한 分野로 認識되고 있는 經濟法에 관한 問題와 市民社會의 社會的인 價値가 表明되어야 한다는 前提이기 때문에 社會的이라는 意味의 要點은 企業을 둘러싼 環境主體들 모두가 企業經營에 대한 意思決定權者인 經營者에게 바라고 있는 經濟的 非經濟的 法律的 倫理的 등 여러 側面에 걸친 期待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이라는 것은 歷史性和 體制維持性에 關聯된 概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에 관한 論議는 近代產業社會의 發展過程속에서 歷史的 特定段階에 提起된 問題이기 때문에 歷史的인 概念이지 超歷史的인 概念이 아닌 것이며, 또한 資本主義라는 經濟體制에 있어서의 企業經營에 대한 經營者의 責任을 問題視한다는 側面에서 이는 資本主義의 體制維持的인 問題에 關聯된 概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企業環境을 形成하고 있는 主體들이 經營者에게 바라는 諸種의 期待를 均衡있게 充足시켜야 하는 責任이라는 側面에서 經營者가 遂行해야 할 企業을 둘러싼 利害關係者들과의 利害調整機能을 특히 強調하는 性格의 概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社會的 責任이라는 概念속에는 產業社會의 發達과 企業規模의 巨大化에 따른 必然性和 自律性を 內包하는 것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社會的 責任의 概念을 한마디로 表現하면 現代產業社會에 있어서 企業內外的 여러 社會集團들에 대한 利害關係를 調整하면서 資本主義의 體制속에서 企業의 維持 發展을 위해 專門經營者들이 遂行해야 할 役割이라고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社會的 責任의 肯定論

現代產業社會의 經營者는 그가 行使하는 企業權力이 多元的인 社會의 각 集團에 直接 間接으로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權力에는 그에 相應하는 責任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側面에서 社會的 責任에 대한 肯定論과, 한편으로는 이 肯定論의 論理를 極端의으로 밀고 나가면 이 社會가 企業中心의 一元化社會까지도 豫想할 수 있게 된다는 側面에서 社會的 責任에 대한 不定論으로 區分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먼저 肯定論의 立場을 檢討해 보 고저 한다.

資本主義社會에서 工業의 發達과 더불어 規模의 經濟를 實現하여 企業利潤의 增大를

追求하려는 努力은 企業의 規模를 巨大化시켰고, 이에 따라 企業들은 雇傭 生産 物價 등에 대한 巨大한 權力과 影響력을 保有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 大企業들이 國民 經濟의 各 部門에 대한 影響력의 強化는 社會에 대한 影響력의 肥大化를 초래케 하여 이것이 바로 企業權力的 源泉으로 作用하게 됨에 따라 企業은 이 權力과 影響력의 責任있는 行使를 社會의 各 集團으로부터 要請받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企業의 意思 決定權者인 經營者는 이 社會의 各 集團들이 企業에 要望하는 期待를 均衡되게 充足시켜 주어야 하는 公平한 利害調整者로서의 責任을 誠實히 遂行해야 할 責任을 堪當해야만 하는 것이다.

企業의 所有經營者인 企業家(owner manager)는 企業目的을 利潤極大化에 限定하기 쉬우므로 所有經營者와 企業을 同一視하는 傳統的 企業理論에 立脚하여 社會的 責任에 대한 經營理念을 소홀히 할 수 있겠지만, 企業의 所有와 經營이 分離된 現代 產業社會의 大企業에 있어서는 專門經營者(professional manager)의 出現은 必然적인 것이며 이들 專門經營者는 企業의 意思決定權者로서 社會的 責任의 可能性과 當爲性を 肯定하는 經營者의 企業理論이 一般化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리고 大企業의 專門經營者는 雇傭 經營者에 비해 비교적 큰 自由裁量(discretion)을 行使할 수 있는데 이 專門經營者의 自由裁量이란 株主에 대한 盲從的 忠誠心에서 解放시켜 企業을 둘러싼 株主以外的 環境諸主體들에 대한 主體性도 尊重할 수 있는 것임을 可能케 하는 것으로서 專門經營者의 自由裁量은 社會的 責任을 經營理念化하여 이를 實踐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認識할 수 있는 것이다.

企業의 意思決定權者인 經營者는 企業環境의 構成主體인 利害者集團과의 利害를 調整해야 한다는 主張에 따른 이 利害調整의 役割은 利害關係者들의 主體性を 尊重하는 것인 동시에 社會的 責任의 實行으로 認識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여러 學者와 實業家들이 비슷한 見解를 갖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sup>4)</sup> 그리고 이 專門經營者의 出現은 社會的 責任의 當爲性に 關聯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즉 專門經營者는 職業으로서의 經營을 擔當하는 것이기 때문에 經營이라고 하는 職務는 一種의 職業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社會的 義務感을 必要條件으로 하는 職業의 特質을 갖고

---

4) Q.Sheldon, The Philosophy of Management. 1924.p.44., R.A.Gordon, Business Leadership in the Large Corporation, 1945. chapter 5. Q. Knauth, Managerial Enterprise - Growth and Methods of Operation, 1948. pp.212~213. H.F.Merrill(ed), The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Leadership, 1949. (특히 이 著書에는 General Food會長인 C.Francis, The Procter and Gamble 社長인 R.R.Deupree, R.H.Macy & Co.社長인 J.I.Straus, General Mills會長인 H.A.Bullies 등 實業家の 主張이 收錄되어 있음)

있는 것인바 經營者는 社會的 責任의 當爲性을 經營理念化하여 實行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며 특히 專門經營者는 自己自身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人類를 위해서도 일해야 함을 當爲性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sup>5)</sup>

한편 社會的 責任性에 따른 또 하나의 問題는 自由企業의 制度와 多元社會의 維持에 대한 要求인 것이다. 즉 私企業의 自由性 내지 自律性의 要求는 하나의 重要한 要素가 되고 있는데, 이는 社會全般의 公私益 一致의 要求를 自然의 方式에 의해 滿足시킬 수 없음에 따라 人爲의 一致方式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는 企業의 意思決定權者인 經營者의 自發的 努力에 의해 社會的 責任의 理念化와 그 實踐이 必要한 것이다. 이와 같이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을 다 할 때만이 自由企業制度가 維持될 뿐만 아니라 多元社會의 維持도 可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問題性에 대해 General Foods社의 會長인 Clarence Francis氏에 의하면 「우리들은 自由를 위해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自由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確信하며, 어떤 體制(system)를 만들고 維持하는데 우리가 努力하는 것은 그 體制가 없었을 때 우리가 自由로울 수 없다는 것을 確信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美國的인 產業運營方式이 가장 좋은 것임을 世界에 每日 證明하고 있다고 確信하는 것이다. …… 自由企業의 原理(the principle of free enterprise)는 우리가 힘을 모아 防禦할 수 있으며 防禦하지 않으면 안되는 原理인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國家가 모든 企業을 所有하게 되면 國家는 個人에의 生活을 統制하게 되고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經濟的으로나 政治的 및 社會的으로 國家의 使喚(sevant of the state)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라고 力說하고 있는데,<sup>6)</sup> 이는 自由企業制度의 維持를 위해서도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의 必要性을 強調하는 主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IV. 社會的 責任의 否定論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의 否定論을 주장하는 學者들도 많은 편인데 그 代表的 學說을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自由主義經濟의 辯護者로서 有名한 M. Friedman 教授는 그의 著書 「資本主義와 自由」의 第8章 企業 및 勞動의 獨占과 社會的 責任에서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反對하

5) F.W. Abram, Management's Responsibilities in a Complex World, Harvard Business Review, 1951. p. 4.

6) C. Francis, Businessmen's Resinnesmen's Responsibilities to the Public, 1949. p. 9.

고 있으며, 企業은 所有와 經營의 分離를 前提하고 있기때문에 결국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을 反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經營者나 勞組幹部는 株主나 勞組員의 利益에 奉仕하는 것 以外의 社會的 責任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며,<sup>7)</sup> 經營者가 져야하는 社會的 責任은 단 한가지 뿐인데 그것은 自由企業社會가 保有하고 있는 規則(the rule of game)을 遵守하면서 資源을 利用하여 企業利潤의 增大를 위해 努力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M. Friedman의 社會的 責任論에 反對하는 理由를 要約해 보면 經營者에게 社會的 責任을 지도록 하면 自由企業社會를 破壞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며, 만일 經營者에게 社會的 責任을 지도록 해야 한다면 經營者는 社會의 公僕(civil servant)이 되어야 하고, 또한 經營者가 社會의 公僕이어야 한다면 마땅히 經營者는 企業의 株主에 의해서가 아니라 民主的인 國民選舉에 의해 選出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만일 그렇게 될 때 經營者의 自由로운 意思決定能力은 政府에 의해 剝奪되게 마련이고, 뿐만 아니라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의 實行過程에서 나타나기 쉬운 企業權力の 無分別한 行使는 物價의 引上 등 價格에 의한 資源配分の 機構가 人爲的으로 抑壓되고 歪曲될 수 있는 同時에 株主의 私的所有權을 侵害하게 되어 結局에는 個人主義社會를 否定하여 會社國家(corporate state)를 이룩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否定論의 代表的 學者 중의 한분은 Friedrich A. Hayek 教授를 들 수 있는데, 그는 “The Corporation in a Democratic Society”라는 論文에서 企業이 社會的 責任을 지도록 한다면 危險한 權力 내지 바람직하지 못한 結果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經營者가 追求해야 할 唯一한 目的은 出資者인 株主의 受託者로서 企業에 대한 長期最大利潤의 達成에 있다고 강조하고, 이 目的以外의 分野에 대하여 責任을 지도록 한다는 것은 企業으로 하여금 다른 社會集團에 대하여 權力을 부여하는 結果가 초래되며, 所有와 經營이 分離된 오늘날 참다운 權利가 없어진다면 經營者는 自己意思대로 無責任한 帝國을 만들게 되어 巨大하고 統制하기 힘든 權力을 갖게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與件에서 經營者가 보다 넓은 公益에 奉仕할 경우 그 權力을 統制하기 위해 公益의 調整者인 政府에 의해 企業을 統制하게 되고 그 結果는 自由企業社會를 破壞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經營者는 株主로부터 企業의 資本運用을 委託받은 受託者로서 株主에 의 奉仕라고 하는 經營者 固有의 責任以外에 社會的 責任을 맡기게 되면 出資者의 利益을 輕視하게 되어 株主의 權益을 侵害하는 危險한 權力이 增大될 뿐만

---

7) M.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1962. p.133.

아니라, 社會的 責任領域은 매우 廣範하여 政治的 慈善的 教育的 文化的 領域까지도 社會的 責任이라는 이름아래 責任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며, 예컨대 企業이 教育이나 藝術分野에 대해 社會的 責任이라는 側面에서 資金을 支援하고 그 分野를 干涉하게 되면 文化的 意思決定의 權力을 갖게되어 다른 次元의 社會機能에 參견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結果를 가져온다고 하면서 F.A.Hayek은 經營者는 企業의 經營目標을 株主에의 奉仕와 長期的 利潤極大化에 限定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러나 이러한 目標을 追求하는 過程에 있어서 一般的 法律과 道德의 「 룰 」의 制約을 받지 않는다는 主張은 하는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로 Ben W. Lewis 教授는 그의 論文「 訓戒의 經濟學 」<sup>8)</sup>에서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否定論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의 見解를 要約해 보면 社會的 責任은 economizing에 대해서 無力하다는 것과 또한 社會的 責任感이나 社會良心에 의한 經濟는 自由를 否定하는 生活을 초래케 한다고 力說하고 있다. 즉 B.W.Lewis는 economizing은 그 性質上 衝突할 수 있는 諸要求 — 그것은 모두 合理的이며 좋은 것인가 — 를 處理함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하여 經濟的 決定은 相互依存關係에 있어서 一方의 滿足은 一方의 犧牲이 되따르고 一方의 犧牲은 一方의 滿足을 초래하기 때문에 經濟的 決定은 是認과 더불어 否認도 하고 否認과 동시에 是認도 하기때문에 經濟社會의 全體가 economizing의 意思決定에 關與하고 있어서 economizing is society's job라고 말하면서 社會的 責任이 economizing에 無力하기 때문에 社會的 責任否定論을 주장하는 첫째 理由이고, 또하나의 理由는 economizing이 社會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經營者가 良心이나 社會的 責任感으로서는 解決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企業에서 그 責任을 다 하려고 한다면 國民의 政府에 의해 統制가 增加되거나 國營企業 (governmental enterprise)이 增加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넷째로 T.Levit는 企業이 社會的 責任을 수행한다는 美名아래 經營者의 活動領域이 長期的 利潤增大라는 目標以外로 擴大된다는 것은 그 社會를 企業王國이 되겠끔 한다는 理由에서 社會的 責任否定論에 동조하고 있다.<sup>9)</sup> T. Levit에 의하면 企業에 의한 社會的 責任의 受容은 多元的인 現代의 產業社會를 企業中心의 單元的인 社會로 이끌어갈 危險이 도사리고 있으며, 一部 經營者들이 社會的 責任 그 自體를 重要視하며 目的視하고 있으나 이를 實行하게 된다면 巨大한 企業에 의해 그 社會가 支配되는 새로운 封建社會의 出現이 可能的 것이라 하여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의 否定論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8) Ben W. Lewis, "Economic by Admoni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59. pp.384~398

9) T. Levit, "The Dangers of Social Responsibilites" Havard Business Review, Vol. 36, No. 5. (1958)



그런데 以上과 같은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 否定論의 內容은 現代 資本主義社會속에서 巨大企業들이 不可避하게 企業權力을 保有하게 되었으며 이 權力의 適正한 行使를 통하여 社會의 諸集團들의 期待에 副應해 나가는 것이 곧 社會的 責任의 履行이라는 것, 즉 權利 곧 責任이라는 等式을 認識치 못하는 것 같으며, 또한 現代 產業社會에 있어서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은 企業의 社會的 機能인 經營機能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限界성과 株主에 대한 責任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 V. 社會的 責任의 領域

現代 產業社會에 있어서 經營者에 대해 社會的 責任이 要請되는 것은 企業이 갖고 있는 企業權力의 行爲가 企業의 內外部環境을 構成하는 多元的 社會에 利害의 均衡이 유지 되도록 하는 즉 企業의 社會的 責任의 履行程度에 따라 企業은 그의 社會的인 權力을 누릴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철칙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은 올바른 經營理念의 定立과 利害者集團의 利害調整 및 公害의 防除등으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經營理念의 定立은 一般的으로 企業과 社會와의 관계에 관하여, 또한 企業의 運營方針에 관하여 經營者가 갖는 價値基準 또는 企業活動을 方向지우는 行動哲學의 定立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企業이라는 組織이 하나의 歷史的인 產物인 것처럼 經營理念 또한 하나의 歷史的인 產物로서 時代의 變遷에 따라 變化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經營理念으로서의 利潤理念도 古典的인 理念으로서 產業革命期에 있어서는 重商主義를 비판하고 資本主義를 옹호했다는 뜻에서는 當時에 革新的인 理念이었으나 오늘날의 產業社會에 있어서는 經營理念으로서의 利潤理念을 뒷받침 할 自由放任의 經濟理論이 붕괴됨에 따라 새로운 經營理念으로서의 社會的 責任理念이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음에는 企業을 둘러싸고 있는 利害者集團과의 利害調整問題가 핵심적인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領域으로 認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利害者集團이라 함은 企業環境을 構成하는 主體들로서 株主 從業員 消費者 去來處 金融機關 地域社會 政府 등을 총칭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利害調整의 具體的인 內容으로서의 株主인 出資者에 대해서는 適正水準의 配當支給과 企業의 維持 및 發展, 從業員에 대한 正當한 보수와 人間的 社會的 滿足感의 維持, 消費者에게는 값싸고 質이 좋은 商品과 用役의 提供, 去來處와의 원활한 관계유지, 金融機關에 대해 約定된 期限까지 利子와 元金の 支拂, 同業者와의 公

正한 競爭關係의 維持, 地域社會에의 協力, 政府에 대한 納稅義務의 履行등 이러한 일들을 원만하게 처리해야 하며, 항상 이들 集團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誠實하게 對應해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責任履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利害者集團이 要求하는 問題에는 二律背反的인 關係에 있는 것이 많으며 또한 自己만을 생각하는 一方的인 要求事項도 많기 때문에 經營者가 社會的 責任을 다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줄 수 없다는 事實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企業이 經營活動의 遂行過程에서 發生하는 公害를 産業公害라 일컫는데 工業化의 促進과 더불어 産業公害의 擴大的 發生이 커다란 社會問題로 등장함에 따라 公害防除에 대한 責任이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의 하나로 追加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만약 公害發生이 매우 심각해져서 地域社會에 대해 마이너스의 作用이 계속되는 企業은 社會的 存在理由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타율적 방법에 의해 추방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領域 중에서 株主와 從業員 및 消費者 그리고 産業公害 등에 대한 責任領域을 좀더 具體的으로 檢討해 보기로 하겠다.

## 1. 株主에 대한 責任

私有制와 自由의 理念을 바탕으로 하는 資本主義 私企業에 있어서는 企業에 대한 支配權은 資本의 所有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所有와 經營이 分離되어 企業에 대한 經營者支配가 一般化 되더라도 出資者인 株主의 所有權 自體가 소멸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株主들은 단순한 投機者가 아니므로 그들이 投資한 資本이 經營不實로 감소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企業에 資本을 投資한 것은 利潤이라는 代價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利潤配當을 要求할 뿐만 아니라 長期的으로는 利潤의 極大化를 要望하는 株主들의 關心에 대해 經營者가 責任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企業의 規模가 커지고 巨大한 生産設備과 수많은 勞動者를 고용하여 合理的인 企業經營이 遂行되려면 經營能力을 갖춘 專門經營者가 必要하게 되는데 이 專門經營者에 의해 企業의 經營支配가 이루어지면 株主라는 特定한 利害關係者集團의 意思만으로 企業이 運營되지 않고 現代企業에 要求하게 되는 社會性과 公共性 및 公益性이 반영되는 運營이 可能해지므로 經營者의 지위는 株主들의 意思에 의해 위협받지 않기 때문에 所有와 經營이 分離된 企業에서 經營者의 任免機構 및 經營管理의 職能面에 있어서 經營者에 대한 株主들의 統制力이 弱화되고 있고 소멸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經營者가 株主들에 대한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現代企業의 經營者는 株主에 대하여 어떠한 責任을 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問題의 接近은 法律的 또는 倫理的 性格의 責任履行으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要約하면 適正한 利潤配當을 통하여 株價에 대한 株主의 期待에 副應하는 한편 企業의 業績 및 長短期發展計劃 등에 관련된 諸般情報의 충분한 提供 등으로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株主들에 대한 適正한 利潤配當의 實現을 위해서는 企業利益을 增大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企業利益의 本質을 올바르게 認識해야 한다. 왜냐하면 初期資本主義時代와 같이 利益은 資本의 機能에 의해 創出되는 것이므로 資本의 出資者에게만 分配되는 것이라는 假定에 입각한 전통적인 利益概念에서 벗어나 附加價値로서의 性格을 가지는 利益概念으로 認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傳統的인 利益概念의 認識에서는 收益에서 費用을 公제한 差額으로서 利益을 認識하는데 이 때 收益에서 公제되는 費用을 어떠한 觀點에서 보느냐에 따라 利益概念이 달라지는데, 먼저 利益의 本質的 性格부터 살펴 보면 새로운 技術革新 및 新製品開發 등에 의해 실현되는 創造利益(즉 超過利益)과 良質의 生産機能의 遂行으로써 提供된 社會經濟的 便益에 대한 對價로서 얻어지는 生産利益, 그리고 買占·賣惜·投機 등 不公正行爲 등에 의해 발생케 하는 擬制利益 등으로 區分할 수 있는데 여기서 創造利益 및 生産利益을 附加價値的인 利益으로 認識할 수 있으며 經營者는 이러한 附加價値的 利益의 繼續的인 創出을 實現하여 出資者에 대한 合理的인 利潤配當의 提供은 물론이고 出資의 安全과 長期的인 株價上昇의 持續化에 대한 責任을 지는 한편 經營者와 株主사이에 충분한 Communication을 이룩하여 企業에 關聯된 諸般情報의 提供 등에 관한 責任履行으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 2. 從業員에 대한 責任

오늘날 資本主義社會의 企業은 株主와 從業員 및 消費者 등 세 集團이 企業을 둘러싼 利害者集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代表的인 集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세 集團은 企業의 維持 및 發展에 車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從業員은 企業의 生産活動을 담당하고 있는 役軍들이기 때문에 經營者는 企業이 그 目的 達成의 수단으로서 모든 從業員들로 하여금 長期的으로 勞動能率이 維持 및 增進될 수 있도록 雇傭의 安定화와 勞動條件의 適正化 및 福利厚生施設의 擴充 등을 통해 從業員들의 主體의 人格化를 통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職場共同體의 理念을 가질 수 있도록 勞組와 체결되어 있는 勞動協約의 履行責任은 물론이고 勞動關係法律에 規定되어 있는 法律的 責任履行과 아울러 經營參加 등을 통해 從業員의 人間的 滿足을 얻을 수 있게 하는 責任을 履行해야 할 것이다.

從業員의 人間的 滿足에 대한 責任에는 두가지 側面이 있는데 하나는 經濟的 내지 金錢的인 責任이며 또 하나는 非經濟的 또는 精神的인 責任으로 區分할 수 있다. 經濟的 責任의 領域이라는 것은 雇傭의 維持는 물론이고 勞動時間이나 賃金問題 그리고 厚生福利 作業環境 및 產業災害나 退職後에 대한 保障問題 등의 責任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資本主義의 產業社會制度를 생각해 볼 때 經營者의 從業員에 대한 責任 중에서 특히 雇傭의 維持와 適正賃金의 支給에 대한 責任은 產業平和의 維持와 그 發展을 위한 根本的인 責任인 동시에 經營者가 從業員에 대해서 履行해야 할 積極的인 責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企業은 利潤을 追求할 目的下에 財貨와 用役을 社會에 提供하려고 運營되는 組織體이며 많은 從業員들이 協力하여 共同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集團活動을 하게 되는 것인데, 財貨나 用役을 生産하기 위해서는 勞動力이라는 社會의 公的要素를 投入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代價로서 從業員들에게 賃金이라는 所得의 分配를 實現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아울러 從業員의 經濟生活이 維持되기 위해서는 그 所屬企業의 維持 및 發展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非金錢的 側面에 대한 責任으로서는 일하는 보람을 통해 從業員의 人間的 滿足을 얻게하는 責任인 것이다. 즉 일에 대한 만족과 관련된 책임의 내용은 일에 대한 個人的 主體性을 존중함과 동시에 일하는 과정을 통해 自己實現의 機會提供을 履行해야 하는 責任이다. 그리고 職業的 役割의 수행은 作業에의 動機賦與와 職業的 役割 自體의 특성에 의하기 때문에 作業에의 動機賦與가 높을수록 또한 職業的 役割에 관련되는 沮害要因이 적을수록 職業的 役割의 수행능률은 높아질 뿐만 아니라 從業員들이 수행하고 있는 作業이 그들 作業上의 動機賦與나 기대를 실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作業에 대하여 滿足을 느끼고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만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經營者는 從業員들로 하여금 일이 보람을 찾게하는 動機賦與와 아울러 個人으로서의 人格의 自由를 保障해 주는 責任 즉 從業員들의 思想 信條 등에 대한 個人的 權利까지도 존중하여 종업원들에게 社內의 질서유지에 必要한 水準以上의 服從에의 權限行使를 추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人格의 自由의 保障과 더불어 非經濟的 責任領域에서는 昇進에 있어서도 公正한 機會賦與의 責任履行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종업원이 企業이라는 組織에 關係할 때 期待하는 待遇의 基本이 되는 公正한 機會의 享有에는 그 基準이 多樣하지만 經營者는 社會的 側面에서 보편적이고 必然的인 公正基準을 認識하여 이를 實踐하는 責任을 履行해야 하는 것이다.

### 3. 消費者에 대한 責任

經營者の 社會的 責任에 관한 肯定論者의 立場을 서는 P.F.Drucker 는 消費者인 顧客은 企業의 基礎이며 그리고 顧客이 있으므로 해서 企業이 存在하는 것이고 또한 顧客만이 企業의 雇傭機會를 提供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社會가 企業에 대하여 富를 產出할 수 있는 資源을 위탁하는 것은 消費者를 滿足시키기 위한 것이다.<sup>10)</sup> 라고 주장하면서 企業의 唯一한 目標을 顧客의 創造에 두고 있기 때문에 企業의 經營者는 消費者奉仕 즉 消費者保護의 責任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經營者가 消費者에 대한 社會的 責任의 領域은 消費者가 바라는 良質의 財貨와 用役을 값싸게 그리고 必要한 量을 충분히 供給하여 消費者들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는 것이라고 要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責任履行의 過程에는 消費者의 慾求를 認識하고 이를 充足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財貨나 用役을 開發하여 消費者들의 便益에 寄與토록 하는 積極的인 責任과 또 한편으로는 消費者들의 利益에 反하는 財貨나 用役의 供給을 억제하는 消極的인 責任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一部 先進國家의 消費者行動의 變遷과정의 검토해 보면 첫째 絕對的인 慾望의 時代, 둘째 相對的인 慾望의 時代, 셋째 主體的인 慾望의 時代로 區分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단계인 絕對的인 慾望이 優位를 차지하는 時代에 있어서는 消費者들이 生活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必要한 生活用品의 確保가 가장 重要한 時代이고 또한 自身の 生理的인 慾求의 充足인 絕對的인 慾望이 消費者行動을 支配하기 때문에 經營者가 消費者에 대한 社會的인 責任의 履行에 대하여 社會的인 要求가 強하지 못하지만, 다음 단계인 相對的인 慾望의 時代에 접어들면서부터는 消費生活의 중점은 食問題에서 점차로 衣服問題와 家電製品으로 옮겨가며, 主體的인 慾望의 時代에 접어들면 自動車 쿨러 칼라 TV 등을 중심으로 하는 第2次 消費革命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相對的인 慾望의 時代以後부터 消費者에 대한 經營者의 社會的인 責任은 그 履行을 要求하는 強度가 높아져 왔다.

先進國들도 國家에 따라 差異는 있지만 1950年代 後半부터 1960年代 初期에 이르는 사이에 大衆消費社會的인 상황은 농후하게 나타나 大衆所得의 상승경향과 더불어 강력한 消費革命이 進전을 보이기 始作하자 消費者들은 점진적으로 他人指向的인 價値觀을 몸에 지니게 되어 남에게 뒤지지 않겠다는 또한 남과 같은 생활을 하고 싶다는 相對的인 慾望이 消費者의 行動을 支配하기에 이르자 거이 이와 매를 같이하여 消費者運動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政府도 消費者行政의 형태를 정비해 나가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生産者爲主의 行政에서부터 消費者保護를 위한 行政으로의 胎動을 엿볼 수 있었고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10) P.F.Drucker, The Practice of Management, Modern Asia edition, 1961.p.37.

消費者保護의 社會的 責任을 企業에서 履行하라는 壓力이 커져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또 다른 側面은 生産은 단순히 財貨나 用役을 生産하는데 그치지 않고 大量消費가 불가피하고 이 大量消費를 위해서는 大量傳達이 企業에 의해 實現되지 않을 수 없어서 企業은 生産을 지속함과 동시에 慾望을 개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慾望이 生産에 의존한다는 J.K.Galbraith의 依存效果에 의해서 消費者의 慾望은 大量生産을 하는 大企業에 의해서 創出되고 助長되어 生産者인 企業의 支配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經營者에 의한 社會的 責任으로 깊이 認識해야 할 것을 要請받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經濟를 수레에 비유한다면 生産과 消費는 수레를 움직이게 하는 두개의 바퀴에 비길 수 있는 것이며 이 두 바퀴는 어느 것 하나라도 허약한 狀態에 이르게 되면 결국 수레는 균형을 잃어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經營者는 企業의 生産活動을 중요시하게 다루듯이 自己企業의 顧客인 消費者의 保護에 관한 責任도 重要함을 認識하여 그 責任履行의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4. 産業公害에 대한 責任

1960年代에 들어서서 世界的인 工業化推進의 進行過程에서 技術革新과 都市化 및 産業公害의 問題가 새로운 關心事로 등장하게 되었다. 産業公害는 企業의 生産活動過程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마이너스作用의 現象이라고 할 수 있는데 企業의 發達과 더불어 産業公害의 問題가 社會的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企業은 한편으로는 社會的으로 有用한 財貨나 用役의 生産·供給에 努力함과 同時에 또 한편에서는 그 生産過程에서 發生하는 産業公害를 防除하는 責任을 履行할 때 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社會性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産業公害問題는 經營者의 새로운 社會的 責任問題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公害가 발생함으로써 市民이 입게되는 피해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公害의 發生現象으로는 大氣汚染 水質汚染 騒音 振動 地盤沈下 惡臭 煤煙 등으로 인하여 呼吸器系統의 질환발생을 비롯한 人體에 주는 피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라, 自然環境에 직접적인 被害를 주는 일이 많은데, 예를 들면 森林이나 花草 鳥獸類 農作物 등을 파괴하고 또한 燃料의 消費量이 많아져서 탄산가스가 많아지면 氣溫이 上昇하게 되고 한편 煤煙에 의한 大氣가 汚染되면 日照量이 줄어 들고 紫外線의 量이 줄어들어 구름이 많아지고 안개가 짙게 끼이는 등 여러모로 氣象變化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人間에게 주는 被害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世界的으로 擴大되어 갈 때인 1972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하나 밖에 없는 地球를 保護하자”는 주제아래 열린 유엔 人間環境會議에서는 「오늘날의 環境汚染은 第2次 世界大戰 이후의 유래없는 工業

技術 및 科學의 變化에 주로 기인하였다. 現代生活의 주요 構成要素들은 大氣와 水路에 變質되지 않은 汚物과 毒物을 남겨 놓았다. 따라서 이러한 汚染物이 大氣와 海洋 등에 흘러감으로 退化狀態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어떤 措置를 취할 必要性이 생기게 되었다」고 선언한 바와 같이 높은 經濟成長이 이루어지고 人口나 產業에 과도한 都市集中이 進行되는 경우 그 地域社會는 各種 公害에 시달림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經濟開發을 推進해 나아가면 나아가수록 公害問題도 加速的으로 激化하게 될 것이 거의 必然的인 事實이기 때문에 企業의 意思決定權者인 經營者는 自己가 管理하는 企業에서 公害發生의 억제책임을 社會的 責任으로 認識하고 履行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企業의 意思를 決定하는 對象領域으로는 株主 從業員 消費者 同業者組合 去來處 등 이른바 利害關係者集團이 包含되어 있으며 이들 利害關係者集團의 成熟過程은 權利意識의 向上, 組織化, 參加意識의 形成, 權利保護의 法的要求라는 共通的인 特徵이 있는데 이러한 成熟過程을 밟는 또 하나의 利害者集團이 地域社會인 것이다. 그러므로 經營者는 企業에 있어서의 環境汚染問題를 解決하는 基本的인 前提條件으로서 地域社會를 企業의 利害關係集團의 한 構成要素로 認識할 뿐만 아니라 公害問題를 專擔할 部署를 設置해야 한다. 왜냐하면 地域社會를 企業의 利害關係集團의 한 構成體로 認識한다. 하더라도 그 集團의 利益이나 環境改善의 주된 職能을 擔當할 수 있는 組織部門이 編成되지 않으면 公害問題와 관련된 地域社會에 대한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達成은 實質的인 行動으로 具體化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公害로 인한 環境汚染이 局地的인 現象임에도 불구하고 經濟의 發展, 人類의 進歩의 뒷면에 숨겨진 必要惡이라는 意識으로부터 점차로 環境汚染은 國民共通의 또는 人類共通의 財産인 環境資源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이 產業公害는 今後的 經濟發展이나 人類의 進歩를 本質적으로 制約하는 主要한 要素이고 따라서 만일 우리가 이를 克服할 수 없다면 우리 人類는 自己 運命 뿐만 아니라 地球上의 모든 生物의 運命조차도 危險한 경지로 끌고 가게 될 것이라는 認識을 해 본다면 이는 經營者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社會的 責任領域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 Ⅵ. 結 論

以上에서 經營者에게 要求되고 있는 社會的 責任의 概念 및 社會的 責任의 肯定論과 否定論, 그리고 社會的 責任의 領域 등을 檢討해 보았다.

그런데 이처럼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이 論議되기에 이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企業

規模가 巨大化함에 따라 이들 巨大企業이 社會에 미치는 影響이 점차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資本主義 初期의 小規模 企業群에 있어서는 所有經營者인 企業家の 責任이 企業內部問題를 解決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으며 經營理念도 營利追求에 限定하여도 되었으나, 企業規模가 巨大化되고 國民經濟上의 企業의 比重도 높아감과 아울러 利害關係者들의 利害가 상충되는 일이 빈번하여지자 一般大衆으로부터 比判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음을 認識하여 마침내 現代企業이라면 社會的 責任의 履行을 앞에 내세울 수 밖에 없는 對象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現代企業이 追求하는 目標가 최소한 社會的 責任을 다해야 한다는 문제점에서 營利性의 追求에 있는 것이 아니라 經濟性의 追求에 있어야 한다는 論理的 귀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時代的 要請에 따라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認識을 自覺케 하기 위하여 1965년에 大韓商工會議所에서는 企業人들이 公正한 經濟活動을 기함으로서 國民福利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는 5個項에 달하는 經濟倫理綱領을 채택한 바 있으며, 또 1980년에는 大韓商議, 全國經濟人聯合會,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貿易協會 등 經濟 4團體가 企業의 自體淨化를 위하고 社會的 責任의 履行을 위해서 專門經營體制的 確立과 企業集中의 止揚, 正常利潤의 追求 및 福祉社會建設에 앞장서는 것 등을 골자로 한 6個項의 企業倫理綱領을 채택하고 있는 實情 등을 檢討해 볼 때 우리 나라에서도 經營者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問題認識이 드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現代企業은 그 規模가 巨大化함에 따라 社會의 公的 組織으로서의 性格을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 企業의 經營者는 公的 組織의 責任者 役割도 同時에 하게되는 것이다. 만일 企業이 다른 公的 組織과 마찬가지로 國家의 철저하고 완벽한 법적 規制를 받는다면 經營者는 그 테두리 안에서 行동을 함으로써 社會에 대한 責任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國家는 다른 公的 組織과 달리 企業에 대하여 철저하고도 완벽한 規범을 제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資本主義 體制下에서의 企業은 다른 公的 組織과 달리 法規에 의하여 그 存在價値를 保障받는 것이 아니라 競爭企業과의 부단한 競爭에서 패배하지 隘음으로써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國家는 法律로서 企業의 獨占性을 부여하지 않은 한 法律으로써 그 存在價値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企業의 經營者로 하여금 社會에 대한 責任을 履行하는 過程에서는 企業의 行爲가 社會에 대하여 나쁜 影響을 미치지 않은 한 經營者의 唯一한 責任은 利潤을 極大化하는 것이라는 소극적 또는 否定論的 立場에서가 아니라, 오늘날의 巨大 企業은 막대한 權力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社會的 政治的 經濟的 현상이 상호 불가분의 關係에 있다는 認識으로부터 출발하여 企業의 行爲는 社會에 좋은 影響을 끼쳐야 한다는 積極적 또는 肯定論的 立場에서 責任履行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國民經濟를 運營하는 企業家를 포함한 經營者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는 보는 사람의 視覺에 따라 여러가지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는 건전한 資本主義精神이 貧弱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韓國企業人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합리성의 결여, 한탕심리, 非生産的 投資, 사치성 등은 바로 막스·베버가 “프로티스턴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지적한 勤勉, 誠實, 節約, 信用 등의 德目を 갖추지 못한데서 연유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非合理的이고 非倫理的인 手段과 方法으로 탐욕을 추구하는 賤民資本家的 企業人은 社會的 責任을 새롭게 認識하여 公益實現을 위한 努力이 健全한 資本主義精神에서 自發的 自律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